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2022

육아정보는?



어디?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있었네.

가득~ 가득 육아정보

[목차]

1

양육지원서비스

1) 육아종합지원센터	4
2) 첫만남 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12
① 첫만남 이용권	
② 영아수당	13
③ 아동수당	14
3) 양육수당	15
4) 시간제보육서비스	17
5) 아이돌봄서비스	19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1
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22

2

보육지원서비스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25
2) 보육료 지원	30
3) 국민행복카드	37
4) 보육지원체계 개편	39
① 기본보육 이해하기	40
② 연장보육 이해하기	42
③ 보육지원체계 Q&A	46
5) 전자출결시스템 안내	49
6) 제4차 표준보육과정 소개	50
7) 2019 개정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소개	52
8)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개	55
	56

3

우리 지역 육아정보

1)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	59
2) 강원도 특색지원사업	61
3) 지원 서비스	63

육아정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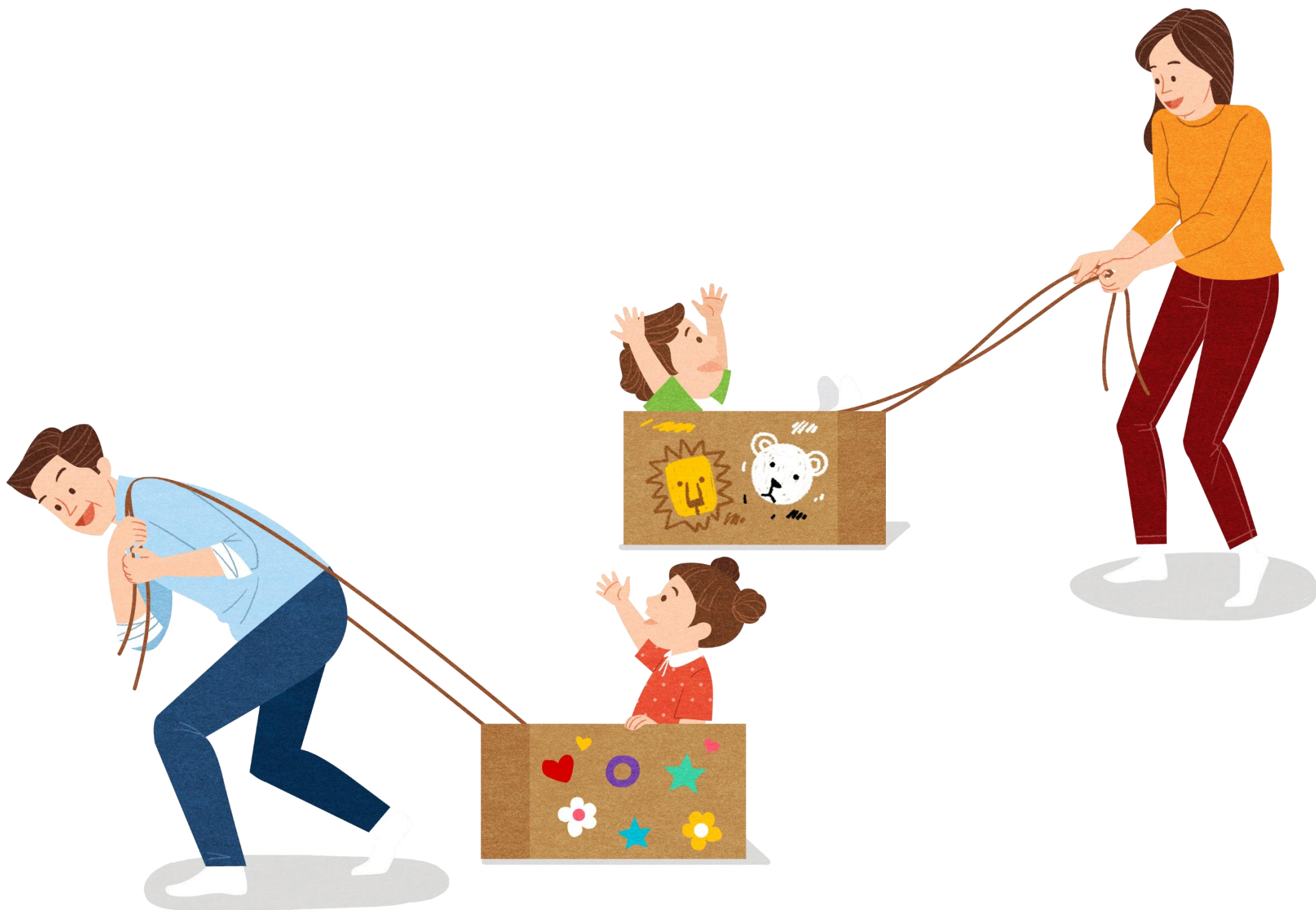
어디? 어디있을까?

여기! 여기있었네.

가득~ 가득 육아정보

양육지원서비스

육아지원전문기관 소개 · 첫만남꾸러미 · 양육수당 ·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1 양육지원서비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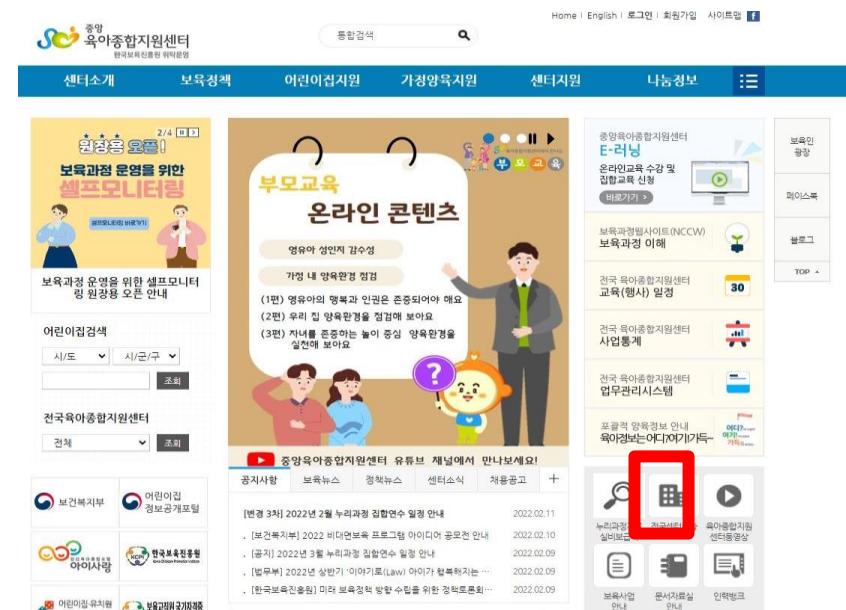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 (법 제7조)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 영유아 체험·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 부모상담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 교육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 영유아학대 예방 교육 및 상담 ▪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개정 누리과정 연수 ▪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역량강화교육 ▪ 센터운영지원 ▪ 센터평가 ▪ 센터 우수운영사례 공모 ▪ 센터 이용사례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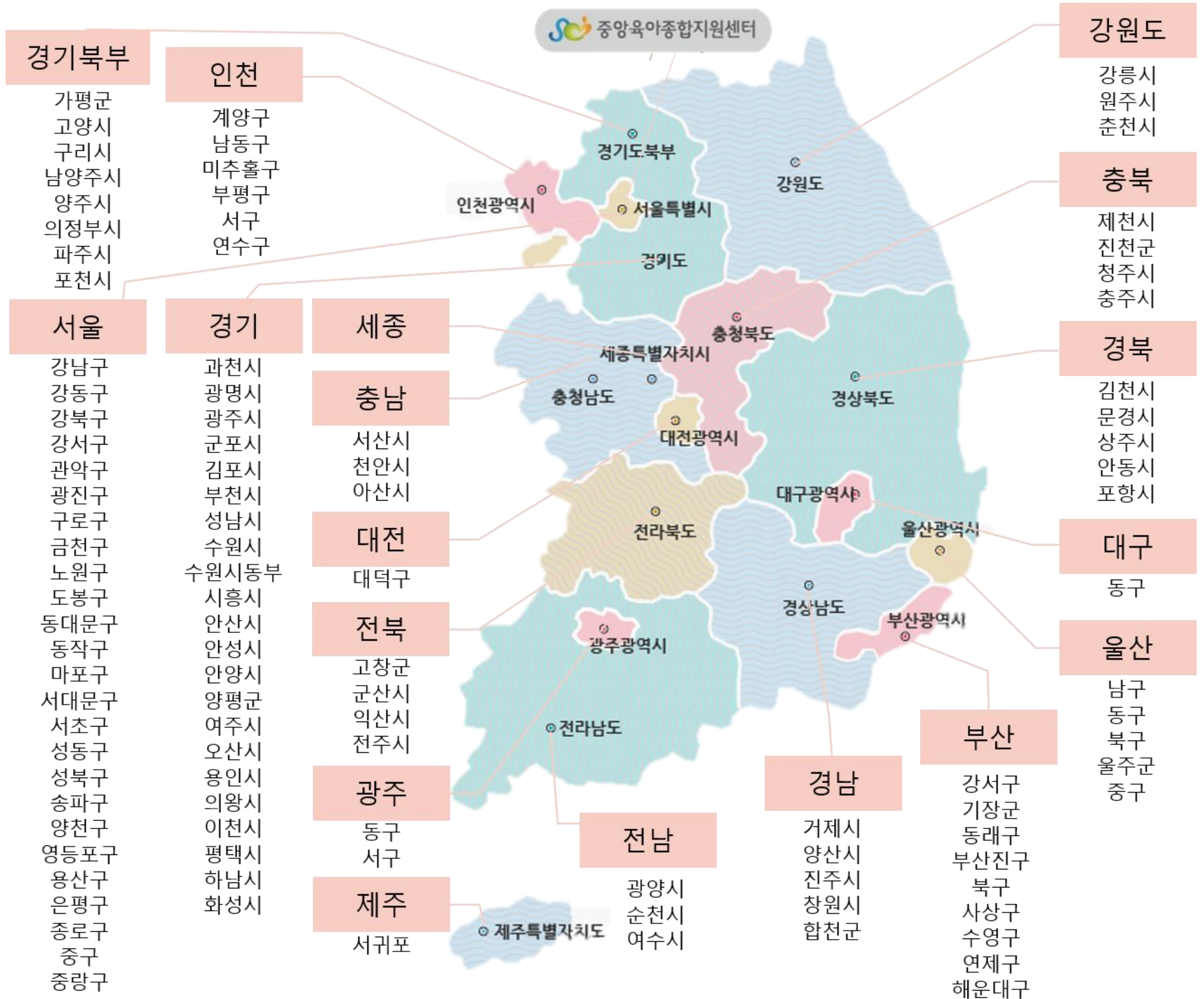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센터 소개 → 전국 센터 현황'에서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인하여 각 센터로 이용 문의
(<http://central.childcare.go.kr>)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 : 1577-0756



1 양육지원서비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



- 중앙을 포함하여 시도 및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총 12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개소를 준비 중인 센터가 있음

* 2022년 2월 기준

*충남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4월 개소 예정

1 양육지원서비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 부모됨, 영유아의 발달 등에 대하여 배우며 부모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돕는 교육으로 입문, 기본, 심화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과정상의 특성과 양육 사례별 대응 방법, 자녀 강점에 따른 놀이 방법 등을 안내

부모교육 내용



01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입문] 클로버 (부모대상) ♥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입문] 클로버 (부모·자녀 체험활동)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기본]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육아정책 소개 ♥육아지원 서비스 안내 ♥지역 내 육아정보 안내
[심화]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자녀의 존엄성과 놀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환경 점검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양육환경 실천	NEW	
[심화] 부모 양육태도 점검 ♥부모-자녀 놀이태도 점검 ♥부모-자녀 놀이행동 촉진 방법 안내		

02 아이 마음 헤아리기

[기본] 자녀 권리존중 ♥자녀권리 인식 정도 자기 점검 ♥다양한 사례 중심의 양육방법 소개	[기본]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인권 중요성 이해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강화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양육방법	[심화] 영유아 발달 이해 ♥자녀의 개별 특성 이해 ♥자녀 강점에 따른 놀이 방법, 상호작용법 안내
--	--	---

03 내 마음 토닥이기

[심화] 양육 스트레스 관리 ♥아직은 낯선 이름, 엄마 ♥알아야 쉬워지는 육아	♥엄마라는 무거운 짐 ♥함께하는 육아의 어려움
---	------------------------------

클로버 부모교육



자녀권리존중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발달 이해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양육 스트레스 관리

1 양육지원서비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비대면 부모교육

- 코로나19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한 공통 부모교육으로, 상시 운영 및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비대면 부모교육 과정



집에서도 놀(면서)자(란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부모의 신청에 따라
놀이키트 제공



놀이를 부탁해

다양한 영유아 놀이
활동을 소개하는 놀이
자료집 제공



놀(면서)자(란다) 알(수록)자(란다)

부모와 자녀의 놀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관찰 후
전문가 의견서 제공

1 양육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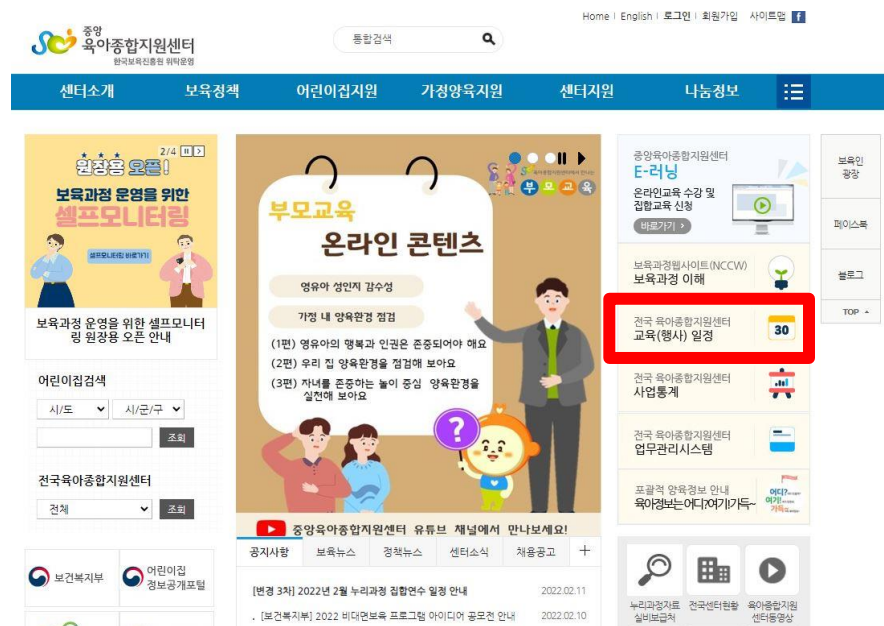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신청방법

- 영유아 부모 또는 양육자,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면(화상), 비대면, 온라인 부모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운영 및 일정은 센터별로 상이하니, 지역센터로 문의 바람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교육(행사)일정 클릭



② 가정양육지원 → 센터별 → 해당 지역 선택



2월 교육(행사) 일정 (19건) 2022년 02월 검색

행사 교육 상담 공통부모교육 센터명 가나다순 행사기간순

번호	구분	센터명	제목	행사기간	신청하기
19	교육	강원/원주시	북아트 활동 '새싹을 키워요'	2022-02-26~ 2022-02-26	바로가기
18	공통부모교육	경남/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2022-02-25~ 2022-02-25	바로가기
17	교육	경기/김포시	[공통부모교육] 영유아발달이해 부모교육	2022-02-23~ 2022-02-23	바로가기
16	공통부모교육	경남/경상남도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2022-02-23~ 2022-02-23	바로가기
15	공통부모교육	강원/춘천시	[온라인 공통부모교육] 집에서든 놀면서 자란다.	2022-02-22~ 2022-02-24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영유아 부모 및 자녀, 관내 어린이집
- ▶ 신청방법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 접수/홈페이지 접수/방문 접수
- ※ 센터별로 교육 신청일정이 상이하니, 지역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1 양육지원서비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부모교육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마음 대화법

멋진아이 골든벨	소개 영상	멋진아이 유레카	소개 영상
	중립언어로 말하기		생각을 여는 질문하기
	나의 대화신호등 알아보기		대화 CCTV
	Oh! No 대화, Oh! Yes 대화		위험한 칭찬, 위대한 칭찬 알아보기

애니메이션을 통해 들여다 보는 아이마음

낮가림	옆집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신체적 학대	엄마 내가 싫어?
애착물	내 친구 보들빠방	방임	혼자 있는 건, 정말 무서워
또래간 다툼	이제 같이 놀아도 돼?	영유아 성 행동 이해	새우가 좋아서 그랬어
형제간 다툼	마음이 기울어지면 터지는 풍선!		봄이는 아빠가 궁금해
미디어 중독	아빠보다 아빠어플! 딱 한 개만 보려고 했는데...		몰래 봐서 미안해
편식	밥 먹기 전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엄마는 무무보다 스마트폰?
떼쓰기	나는 불! 아빠는 얼음!		아빠와 봄이의 스마트폰 어드벤처
거친 놀이를 즐기는 아이	진정한 정글의 왕!		통이야 엄마랑 놀자
놀이의 중요성	장난감이 되어버린 전집		

정보제공을 위한 부모 교육용 영상

영유아 성 행동 이해	영유아 성 발달 및 성 행동의 이해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스마트폰 과의존 NO, 스마트한 부모되기ON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영유아 성인지 감수성	영유아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부모교육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영유아의 행복과 인권은 존중되어야 해요
	우리 집 양육환경을 점검해 보아요
	자녀를 존중하는 놀이 중심 양육환경을 실천해 보아요

부모의 마음을 토닥이는 시간

양육 스트레스 관리

소개 영상

1 양육지원서비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부모교육 신청방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부모교육 수강 가능

☞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해보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youtube.com
central.childcare.go.kr



가정양육 지원사업 → 공통 부모교육 → 온라인 부모교육

온라인에서도
만나요~



1)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 상담

- 지원대상 : 취학 전 모든 영유아 및 부모
- 지원내용 : 대면·화상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비대면상담(전화, 홈페이지 등)

※ 상담 운영방법 및 내용은 센터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도서 대여 및 놀이(체험) 공간 제공

- 지원대상 : 취학 전 모든 영유아 및 부모
- 지원내용 : 장난감·도서 대여 및 놀이(체험) 공간 제공

※ 장난감·도서 대여 및 놀이(체험)실 운영 내용은 센터 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람



2) 첫만남 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①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이란?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

지급시기 및 사용기간

- 22. 1. 5일부터 신청 받으며, 22. 4. 1일부터 지급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1 양육지원서비스

2) 첫만남 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② 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 받음
- 부모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가정양육 시),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수급 가능
 - ☞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
- '22. 1.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개월 간 지급

구분	2022년 이후	
가정양육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 현금지급(계좌 이체)	
시설 이용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전액
	종일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
-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필요(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2) 첫만남 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③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에게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매월 25일)**
 - ※ (국적 · 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22. 1월 기준 만 8세 미만인 아동('14. 2. 1.이후 출생아)은 '22년 1월분 수당부터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 아동수당은 미 신청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
 - ※ 시스템구축, 정보현행화등을위해이미지급이중단되었거나중단될아동(2014.2.1.~2015.3.31.출생아동)은 '22. 4월에 '22. 1~3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재외국인 등록·관리 가능)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서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나,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준항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할 경우에만 소급지원함
- ※ 어린이집 입·퇴소시, 보육료-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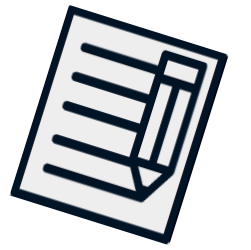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자녀의 보육 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불가)

1 양육지원서비스

3) 양육수당



양육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

방문 시 구비서류	비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증서)	

※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없음

※ 신청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하니 홈페이지 참조

지원금액

(2022년 보육사업안내 참고)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천원	12개월 미만	월 200천원	36개월 미만	월 200천원
24개월 미만	월 150천원	24개월 미만	월 177천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전)	월 100천원	36개월 미만	월 156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전)	월 100천원
		48개월 미만	월 129천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전)	월 100천원		

4)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이란?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 (6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시간		월 80시간
시간제 보육료	정부 지원금	시간당 3천원
	부모 자부담	시간당 1천원

시간제보육서비스 결제 및 예약방법

- 결제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시 마다 결제
(서비스 이용 전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화 (☎ 1661-9361)
- 신청기간: (사전예약) 서비스 이용일 1일전까지, (당일예약)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4)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및 절차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PC)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후 이용 가능
- 관리 및 제공기관(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등록 가능 (단, 이 경우 향후 시간제보육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구분	단계별 이용방법	부모 이용 절차	
서비스 이용 전	인터넷(PC이용) www.childcare.go.kr 또는 방문 등록(관리/제공기관)	인터넷 이용 시(이용자 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관련 개인 서류 제출 필요
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신청 www.childcare.go.kr m.childcare.go.kr 또는 전화 신청 ☎ 1661 - 936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검색 후 선택	
		시간제보육 신청(이용기간, 이용일, 이용시간 등 선택) *관리/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아동 등록을 진행한 경우 전화 예약만 가능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이용	
서비스 이용 후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 (국민행복카드 결제)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 전화 신청 시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임신육아종합포털'의 「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 사업」
→ 「시간제 보육 기관 찾기」 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평일(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5)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형	- 시간당 10,550원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사 활동 제외)
	종합형	- 시간당 13,720원 - 일반형 + 돌봄 관련 가사 활동 제공 (아동관련 세탁물, 놀이 공간 청소, 아동식사 조리 및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기본)1회 3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시간당 10,550원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 위생, 영양,교육 등 영아 돌봄 관련 활동. 가사 활동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	- 1회 2시간 이상 - 시간당 12,660원 -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아동의 질병 관련 사항 매일 가정에 전달, 입원한 아동 병원 내 돌봄 서비스 불가)	
기관연계 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최소 30분 단위 -시간당 16,870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는 만 2세이하와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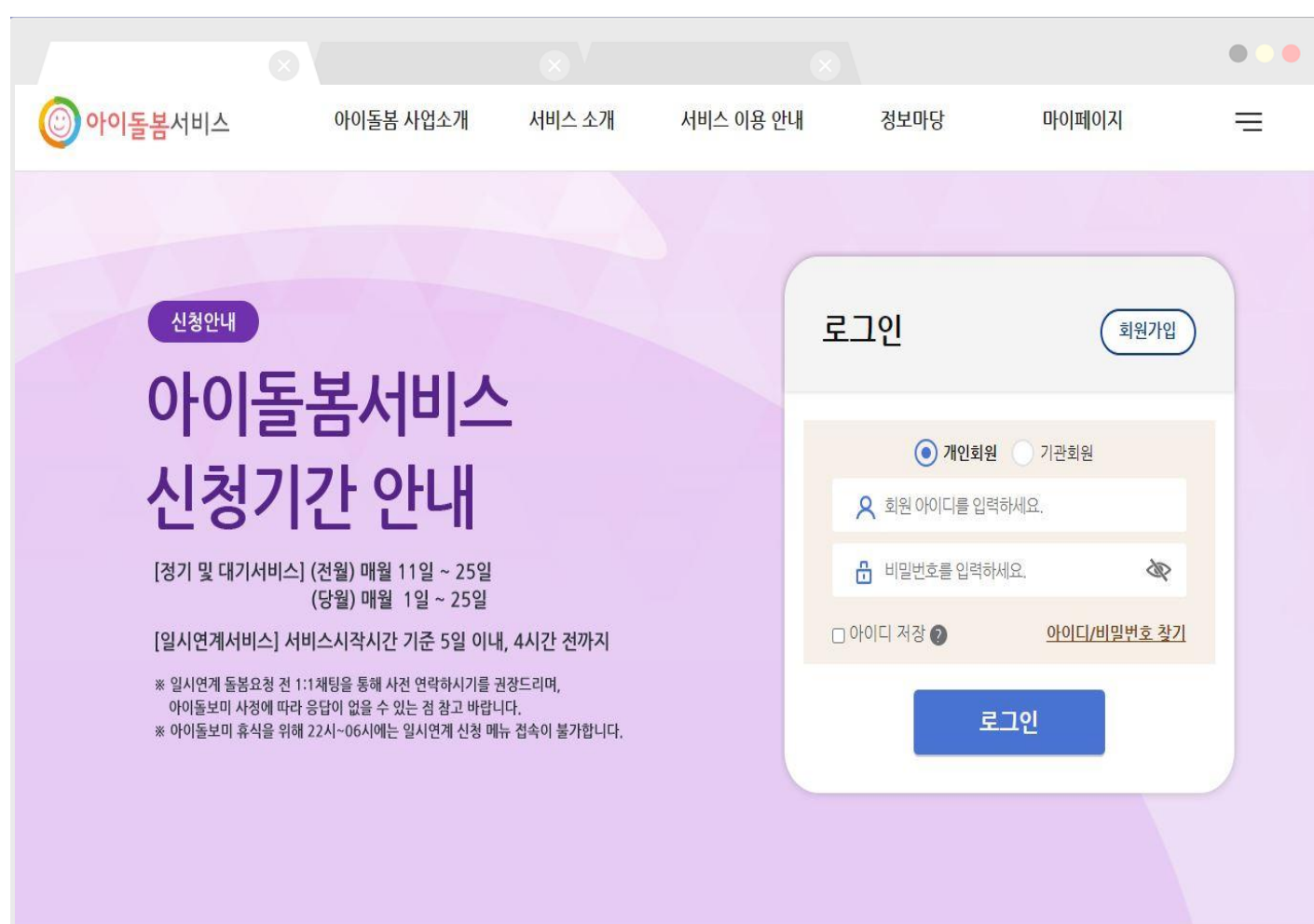
5)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①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
- ② 정회원이 되면 바로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이용 원하는 가정은 정기 이용 대기신청을 하여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종류

- 정기이용: 다음달 희망 이용 일시와 돌봄 아동, 돌봄 요청사항 등록 및 서비스 신청
- 정기이용 대기신청: 대기가정 등록 후 대기 신청 가능, 다음달 희망 이용 일정 선택하여 신청
- 일시연계: 신청서 작성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3일 이내의 희망 이용일시와 돌봄 아동, 돌봄 요청사항 등록
-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방법은 정기이용과 동일, 증빙서류는 빠짐없이 구비하여 1주 이내에 제출해야 정부지원 가능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서비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상이함
-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지원금액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됨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원에서 최대 509만원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
*시도,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필수

구분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 + 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서비스가격	124,800원	158,400원	218,400원	249,600원

※ 자세한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복지포 (http://www.bokjiro.go.kr) 에서 확인 가능

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이란?

-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도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
- ※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지원가능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문의 및 신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다누리 콜센터 웹사이트 <http://www.liveinkorea.kr/>

※ 아직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대표 사이트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모바일)m.childcare.go.kr

- 양육수당 신청 www.bokjiro.go.kr(복지로)
-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 1577-2514
- 시간제 보육 www.childcare.go.kr ☎ 1661-9361

➤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복지' 또는 '임신육아' 검색

<복지로>



<임신육아종합포털>





보육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입소 기준 · 보육료 지원 · 보육지원체계 개편 ·
제 4차 표준보육과정 · 2019 개정 누리과정 ·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개

육아정보는?

어디? 어디있을까?
여기! 여기있었네.
가득~ 가득육아정보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어린이집 입소 대기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입소 대기 신청
-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소 대기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방법

<입소대기 등록 시점>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보육 나이 만 0세~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일’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대기 중에 18개월 초과 시 입소 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담 필요)

<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

(직장, 협동 어린이집 제외)

-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입소일’ 기준

➤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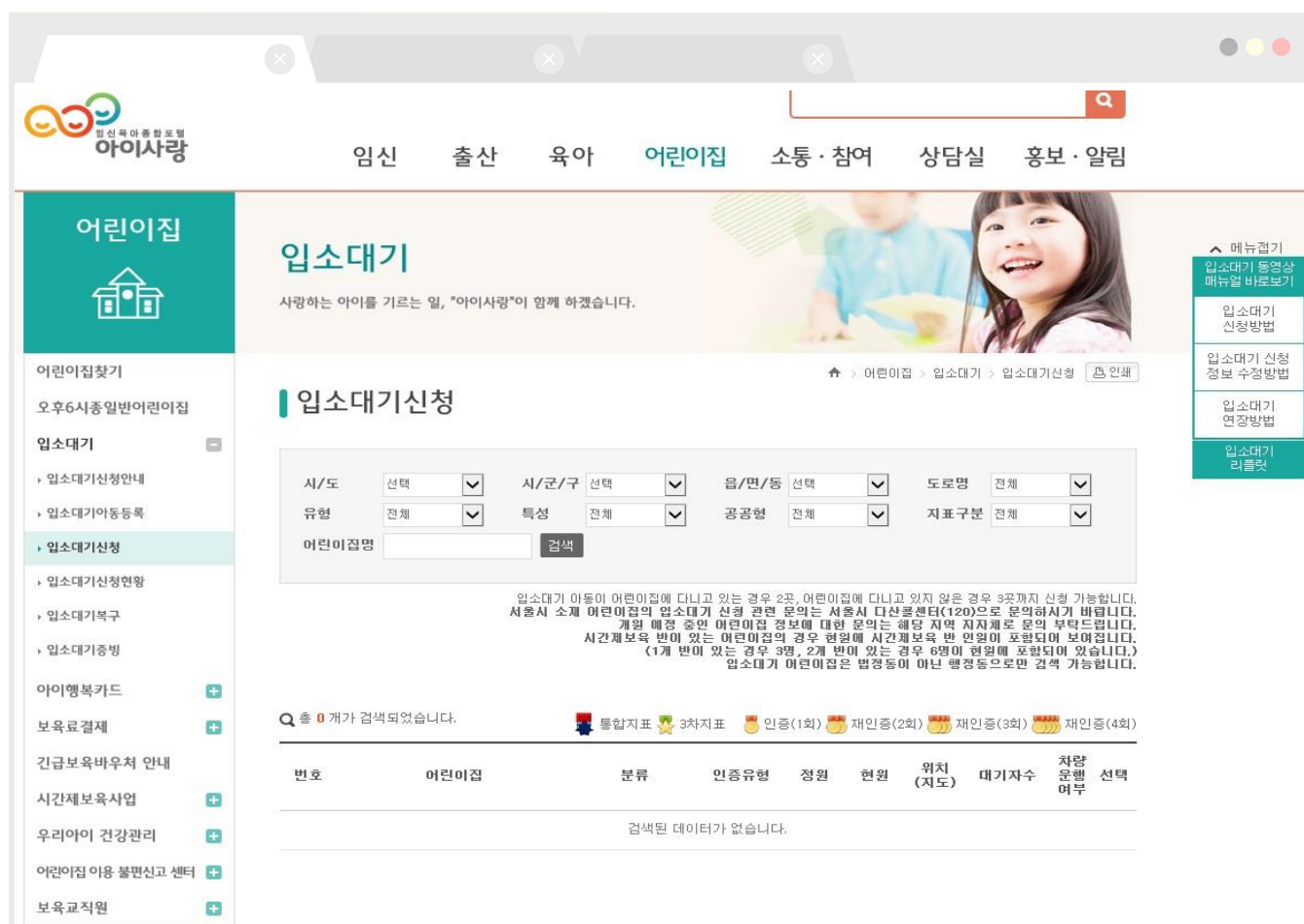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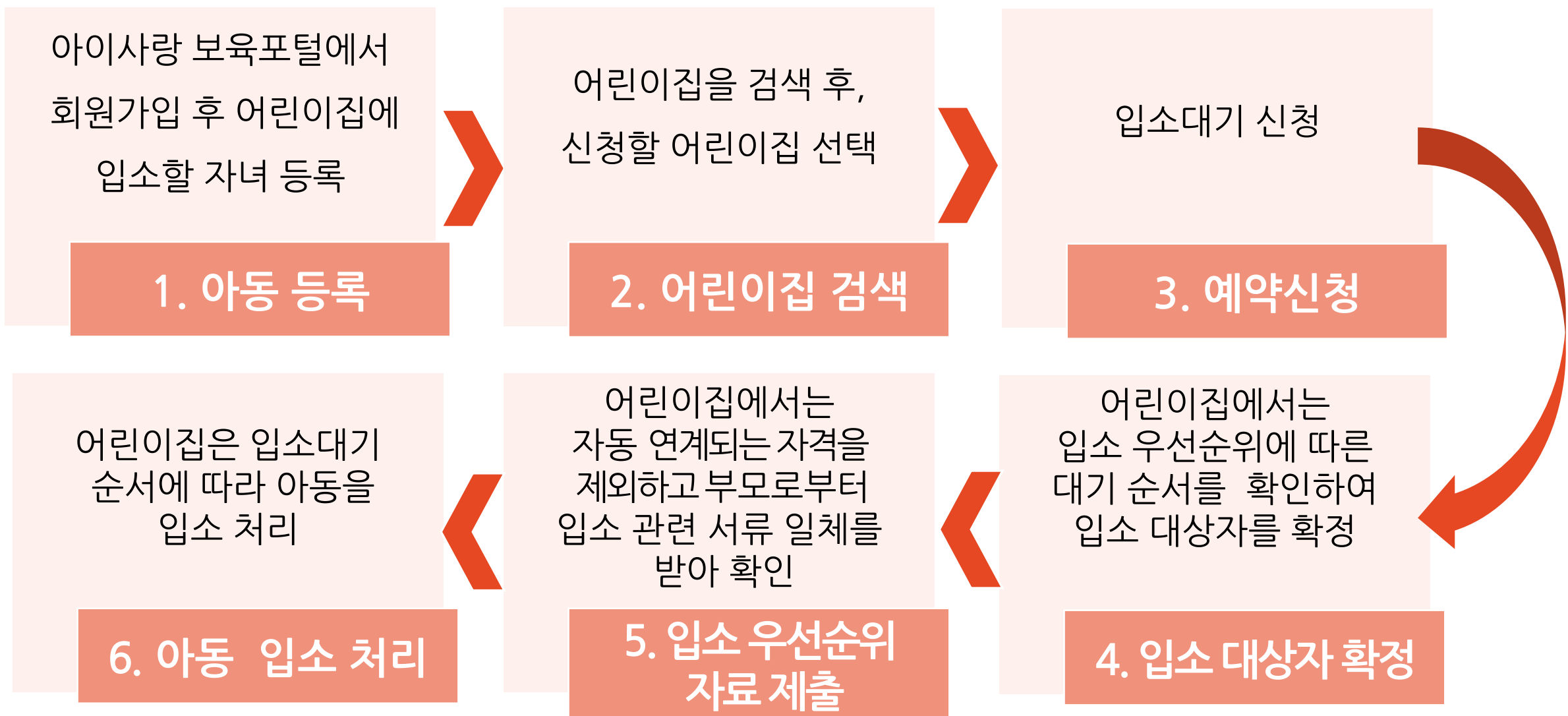
-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는 입소대기 신청이 불가하며, 입소대기를 신청하려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로 입소대기 신청 요청

➤ (어린이집 방문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절차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소대기 시스템 관련 문의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3232 / 단축번호 1번(유료)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기준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

-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2 보육지원서비스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어린이집 입소 시 필수 제출 서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확인 서류] ※ 부와 모 모두 제출

		확인 서류	출		
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취업 준비자	①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필수	①② 중 1부 필수	
	②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 서류 ※ 구직활동증명서류: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 이수 및 학원 수강증 (출석 수업에 한함)	필수		
자영업자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 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 소득신고증빙서류,사업장 매출 장부,소득증명가능서류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매출 계약서, 판매 증명서, 기타 소득증명가능서류	중 1부 필수	

2 보육지원서비스

1) 어린이집 입소 기준



어린이집 입소 시 필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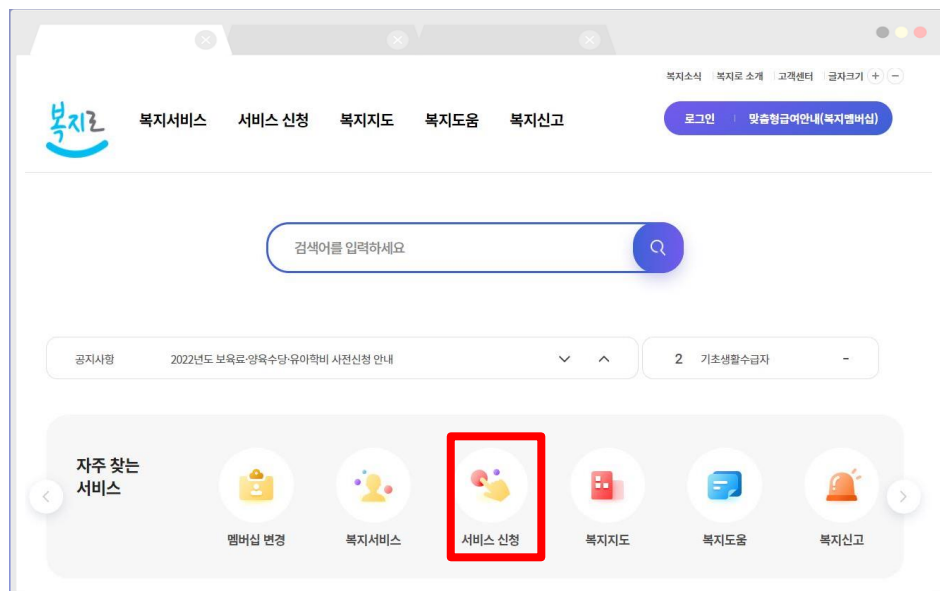
확인 서류		
다자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자녀 이하 임신 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p>※ 영유아가 2명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p>	중 1부 필수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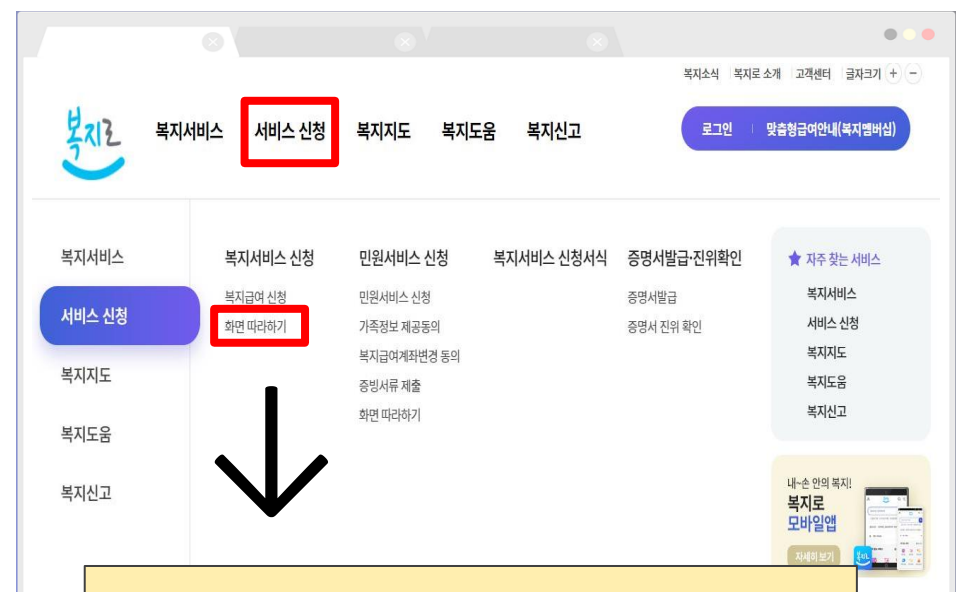
2)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방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5세 영유아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지원)
- ※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또는



‘서비스 신청→화면 따라하기’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시 필요 서류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시 필요 서류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 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 유예 확인서,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 신청서,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여부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 이용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

2 보육지원서비스

2)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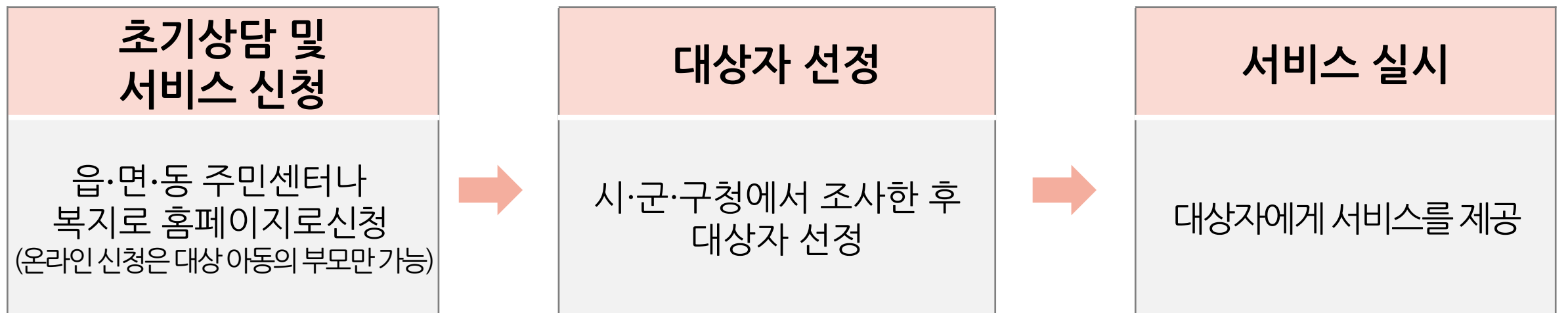
적용시기: 2022. 1. 1. ~

(단위: 천원)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5세	장애아
기본 보육 시간	정부지원보육료	499천원	439천원	364천원	260천원 ('22.1.1.~2.28.) 280천원 ('22.3.1.~)	532천원
	*기관 보육료	570천원	310천원	210천원	-	622천원
연장 보육료		3천원	2천원	2천원	1천원	3천원

* 기관 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절차



* 지원 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중복 지원 불가능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
-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를 이용할 경우에도 장애아 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2)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기준 체크!



출석 인정 특례

-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 입원의 경우는 퇴원일까지)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제출
-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오전 등원시간 내(9:00 이전)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감염병 유행 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한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 ✓ 경조사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사유별 기준일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간주

- 출석 일수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 일수 6~10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 일수 1~5일 →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2 보육지원서비스

2) 보육료 지원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체크!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 변경 필요

① 연장보육 자격 ⇔ 기본보육 자격 변경

구분	기본보육자격 → 연장보육자격	연장보육자격 → 기본보육자격
보육료 수급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보육자격) 자격신청일 전일 자격 중지 (연장보육자격) 자격신청일 당일 자격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보육자격) 자격책정월 말일 자격 중지 (기본보육자격) 자격책정월 익월 1일 자격 생성

②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구분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보육료 수급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 자격중지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 자격생성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료)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일할계산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일할계산

2 보육지원서비스

2) 보육료 지원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체크!

③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간 변경		
변경구분	지 원 내 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p>*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p>*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p>
보육료 ↓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양육수당 전액지원 <p>*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월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p>*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p>
양육수당 ↓ 유아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수당 미지급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p>*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p>*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p>
유아학비 ↓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p>*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p>*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p>

2 보육지원서비스

2) 보육료 지원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체크!

④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양육수당 간 변경		
변경구분	지 원 내 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월기준)	
보육료 ↓ 영아종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영아일제 변경월 말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보육료 변경월 말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영아종일제 변경월 말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변경월 말일로 한다.

⑤ 양육수당 간 변경		
변경구분	지 원 내 용	
	자격채정일 15일 이내	자격채정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월 자격채정된 신규서비스 지원 (이전 자격 지원불가) ➢ 이전서비스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월 변경 이전서비스 지원 (신규서비스 지원은 익월 1일부터) ➢ 이전서비스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2)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지원 기간 :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대상
 -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20.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 후 아동
 -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20. 1. 1. 이후 출생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받는 아동
 - ✓ 해외 체류하는 아동
 -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 등원 아동
 -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단, 소급지원 불가)

3)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란?

- 보육료, '유아학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디서나 사용 가능
- ※ 보육료 및 어린이집, 유아학비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포털 및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신한)



어린이집, 유치원+임신·출산 진료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등

3)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방법

- ☞ 보조금 신청: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
- ☞ 온라인 보조금 신청서: 복지포털 홈페이지(www.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 오프라인 보조금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2 보육지원서비스

4) 보육지원체계 개편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

부모

- 눈치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

교사

- 교사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 환경 개선

영유아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가 돌봄으로써 오후시간까지 활기찬 어린이집 생활

원장

- 적정 보상으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육지원체계 개편 일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① 기본보육 이해하기

기본보육이란?

- 기본보육이란, 어린이집 등원 이후 오후 4시까지의 보육으로, 보육과정 및 이용방법은 이전과 동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 단, 07:30~09:00는 순차적 등원이 가능하며, 통합보육으로 운영

기본보육 운영방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라면 누구든지 기본보육을 이용 가능
- ☞ 종일반·맞춤반이 폐지되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기본보육 대상
- 기존 배치되어 있는 해당 반에서 담임교사가 보육
- ☞ 담임교사의 정기적인 영유아 보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 순차적인 등·하원시간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전후로는 통합반 형태로 운영
- ☞ 단, 연장보육 신청 아동은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짐

• 기억해 주세요!

- ✓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생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적인 어린이집 생활을 돕습니다.
- ✓ 어린이집 기본보육 이용만으로도 영유아의 교육적인 경험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하루일과 및 보육과정 운영은 기본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기본보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적 경험과 또래와의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① 기본보육 이해하기

기본보육시간 동안의 일과

- 기본보육시간 동안 영유아들은 표준보육과정 및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놀이와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성장

• 영유아는 놀이, 활동, 일상생활을 통해 성장

-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따라 놀이, 활동,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생활.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으로 영유아는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식사, 낮잠, 손 씻기, 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건강한 아이로 성장

• 영유아는 정해진 일과를 반복하며 안정감을 느낌

- 어린이집 하루일과는 '등원-오전간식-실내(외)자유놀이-바깥놀이-점심-낮잠 및 휴식-오후 간식-실내(외)자유놀이-하원' 순으로 이루어지며, 영유아는 정해진 일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낌. 어린이집 일과는 영유아의 연령, 흥미, 건강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보육 이용만으로도 영유아의 교육적 발달과 성장에 충분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② 연장보육 이해하기

연장보육이란?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별로 구성된 기본보육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을 말함

연장보육 이용 대상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
- 영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월 최소 10시간 이상)하는 경우가 많고 연장보육 자격 기준(0~2세)에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
 - * 단, 연장보육 신청 전에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 필요

연장보육 운영 내용

- ✓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으로 이동하여 연장반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짐
- ✓ 연장반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운영
- ✓ 교사대 아동 비율 ☞ 영아반 1:5, 유아반 1:15
 - * 0세반 아동으로만 반 구성 시 및 장애아 포함 시, 1:3
 - * 영아반 중 0세반 아동 포함 시, 1:3 가능(어린이집 당 1개반에 한함)
 - * 탄력보육 허용으로 최대 영아반 2명, 유아반 5명 내 추가 보육 가능
- ✓ 연장보육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일상생활(휴식 포함) 등의 일과로 진행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② 연장보육 이해하기

연장보육이란?

1.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원장 ↔ 부모)

- 어린이집 원장님과 연장보육 이용 여부에 대해 상담

※ 17시 이후 하원이 최소 월 10시간 이상 이용 시 연장보육을 신청해주세요.

※ 연장보육이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헐적·긴급한 필요가 발생 시 연장보육 신청 (구두·유선) 후 이용 가능합니다.

2. 연장보육 자격 신청(0~2세반)

- 연장보육자격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

※ 연장보육 자격 결정 및 통지: 시군구

3. 연장보육 이용 신청(0~5세반)

- 연장보육 이용이 결정되면,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연장보육을 신청

4. 연장보육 이용 최종 확정

연장보육 자격 기준(0~2세반 영아 이용 시 충족 해야함)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 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가정	다자녀(자녀 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건강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
학업	재학(원격대학 재학인정), 학위과정(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② 연장보육 이해하기



연장보육 이용 시, 꼭 기억해주세요!



♥ 아이들의 하원 시간을 꼭 지켜 주세요!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 준수는 영유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영유아는 오후 4시, 연장보육 이용 영유아는 오후 7시30분까지 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연장보육 신청 시,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오후 5시 이후 최소한 월 10시간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해 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연장보육 신청에 따라 ‘연장반’ 편성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합니다. 연장반이 2개월 이상 인원과 이용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용된 교사의 인건비가 중단되므로, 연장보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지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보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 귀가할 사유가 생길 경우, 늦어도 당일 오전까지는 담임교사에게 ‘연장보육’을 신청해 주셔야 안정적인 연장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② 연장보육 이해하기



연장보육 이용 시, 꼭 기억해주세요!



♥ 어린이집 하원 후에는 재등원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연장반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하원하고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만 재등원이 가능합니다.

♥ 영유아 어린이집 생활은 담임교사와 상담해 주세요!

연장반 이용시에는, 담임교사가 아닌 연장반 전담교사가 하원지도를 하므로 기본 보육시간 내 궁금한 사항은 '원아 수첩', '스마트 알림장', '전화'를 활용하여 기본 보육반 담임교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보육 시간의 생활은 연장반 교사와 상담

♥ 연장보육시간 하원 시에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함께 귀가 지도를 도와주세요!

(소지품 챙기기, 신발신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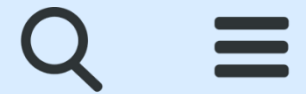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③ 보육지원체계 Q&A



연장보육에 대해 궁금해요 1

보육지원체계



원래 종일반을 이용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종일반 아동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되므로 별도 증빙 및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새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자격 여부 상담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장반 이용 시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하나요?

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전액 지원하므로 자부담(별도 결제)은 없습니다.

연장보육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영아(0-2세)반은 취업, 구직, 돌봄 필요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아(3-5세)반은 별도 자격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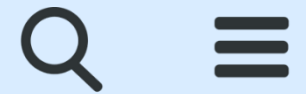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③ 보육지원체계 Q&A



연장보육에 대해 궁금해요 2

보육지원체계



연장보육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0-2세반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격 신청을 하고, 시·군·구로부터 자격 결정을 받은 후 어린이집에 이용을 신청합니다.

3~5세반 유아의 경우, 별도의 자격 결정 없이 어린이집에 이용신청합니다.

기본보육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16시 전에 하원해야 하나요?

16시 하원 시각을 최대한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반을 이용하면 반드시 매일 17시 이후에 하원해야 하나요?

고정적으로 17시 이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4) 보육지원체계 개편

③ 보육지원체계 Q&A



연장보육에 대해 궁금해요 3

보육지원체계



연장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간헐적이거나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구
두, 유선 등)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 아동에게 급·간식이 제공되나요?

연장보육 시간에 급식과 간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연장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급·간식을 제공받고자 한다면
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자료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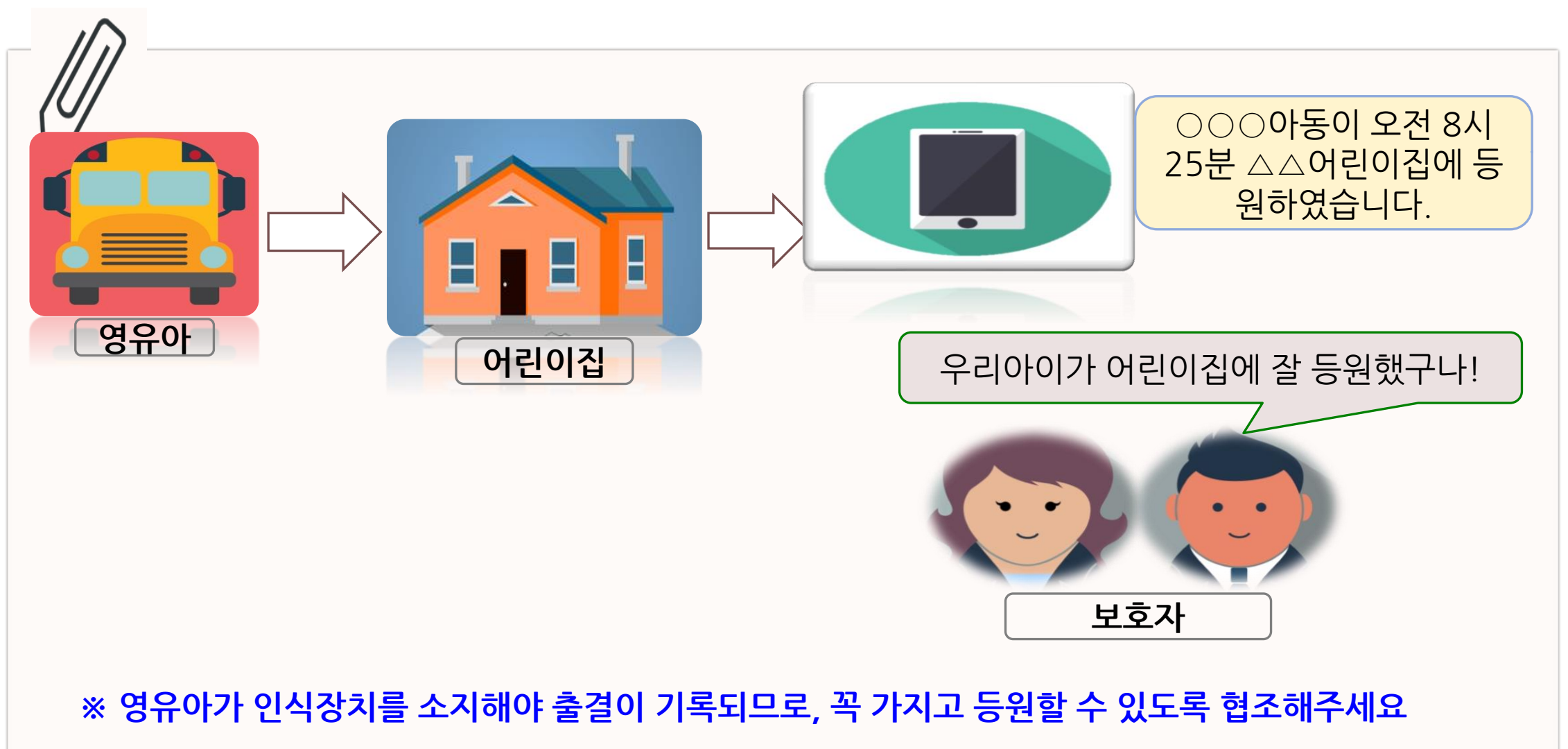
5) 전자출결시스템 안내

전자출결시스템이란?

- 영유아의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영유아 등·하원 시간 안내로 부모님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 ✓ 어린이집은 출석부 서류 관리, 출석일수 확인 및 보육료 신청 등의 행정업무 감소

전자출결시스템 운영방법

- 영유아가 자동 출결을 위한 인식장치(태그 등)를 소지하고 어린이집에 등·하원
- 어린이집에 설치된 등·하원 시각 기록 장치가 이를 감지하고, 서버 전송을 통해 시간이 자동체크
- 영유아 등·하원 시각이 부모님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



6) 제 4차 표준보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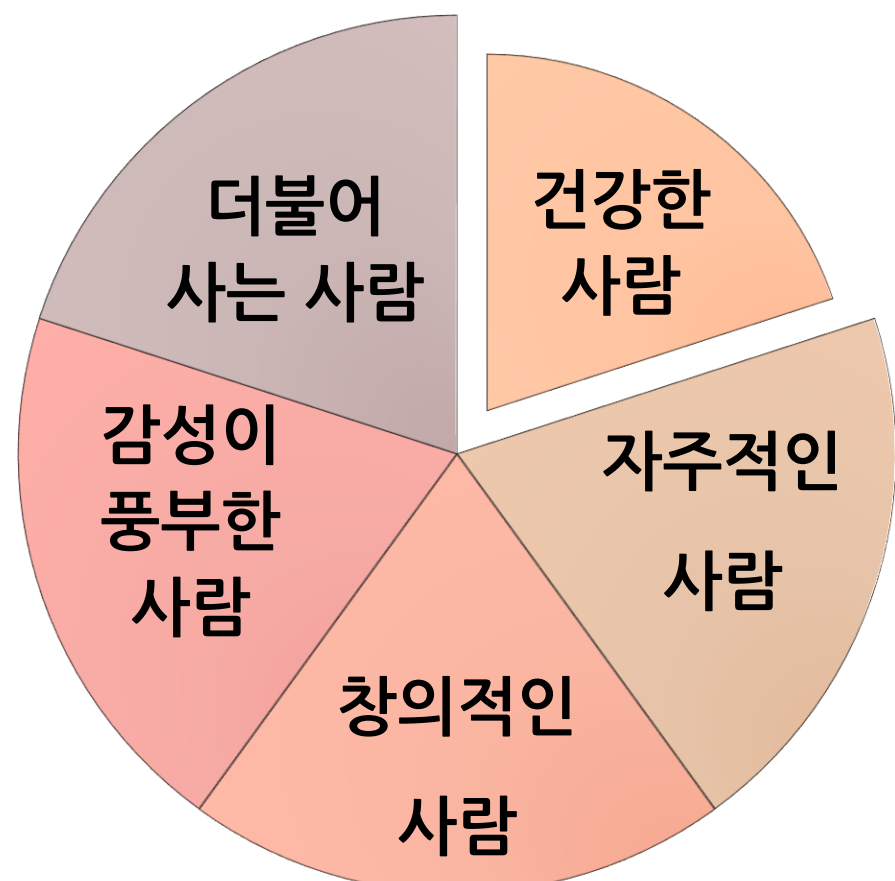
제 4차 표준보육과정이란?

-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

제 4차 표준보육과정 성격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
-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
- 영유아 중심과 놀이중심을 추구
-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
-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

제 4차 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6) 제 4차 표준보육과정

제 4차 표준보육과정 목적

-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 형성

제 4차 표준보육과정 목표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전과 달라진 점

- 바른 인성, 창의적인 인간성 강조
- 연령별, 수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역 중심 내용
- 일상생활, 휴식 등의 균형 있는 영아 중심 강조
- '계획-실행-평가' 구조로 보육과정 운영

-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 강조
- 내용 구성의 간략화를 통해 현장 자율성 확대
- 교사의 보육과정 실행력 지원

2 보육지원서비스

7) 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누리과정이란?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아중심, 놀이중심,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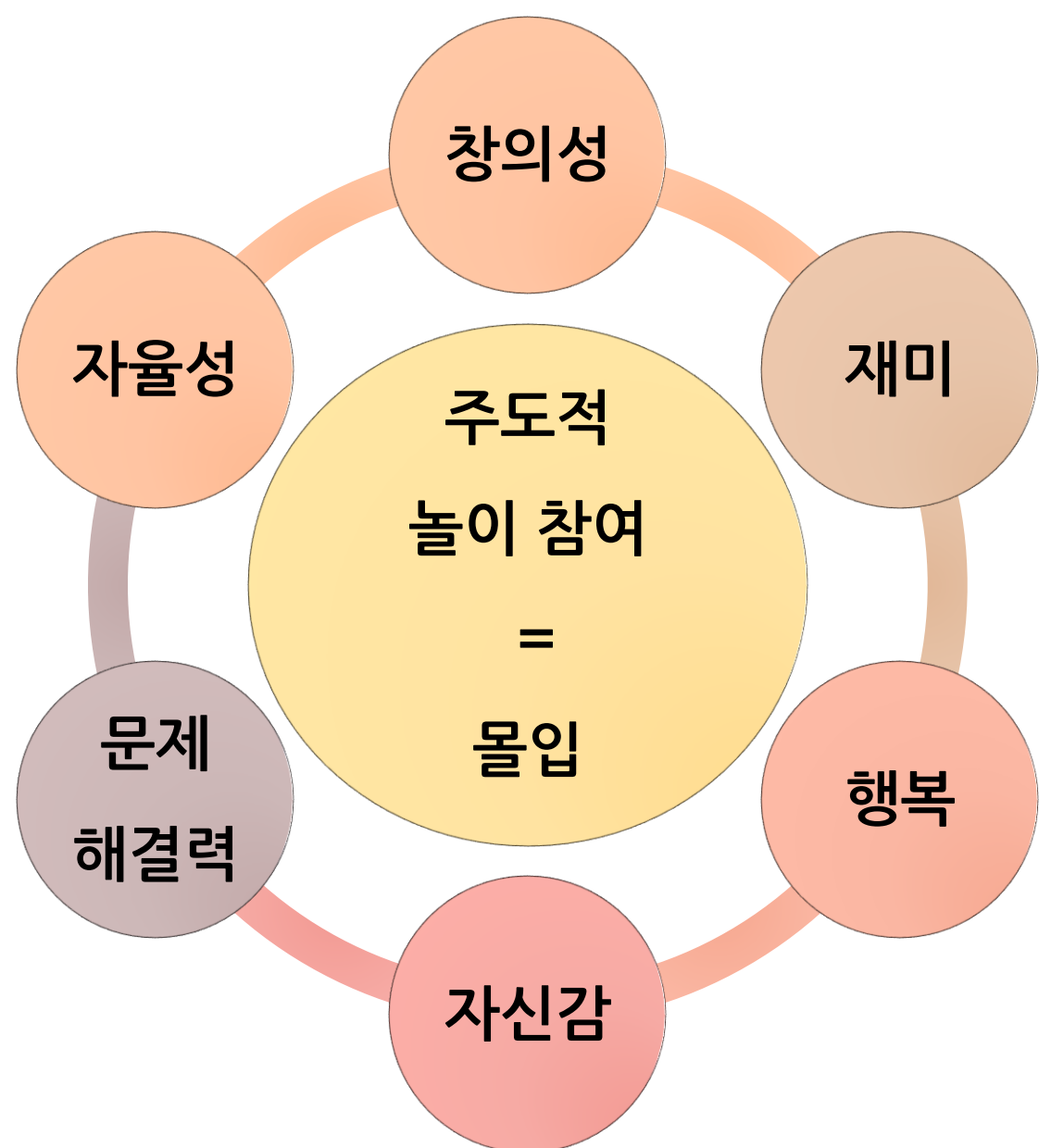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아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주도적·자발적으로 놀이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자율적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



7) 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누리과정 고시 특성

1.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를 확립
2. 누리과정의 성격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
3. 기존의 구성 체계를 유지하고 5개 영역의 내용을 간략화
4.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추구
5. 누리과정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
6. 평가를 간략화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6개 영역〉
신체운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



유치원교육과정(교육부)

〈5개 영역〉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3~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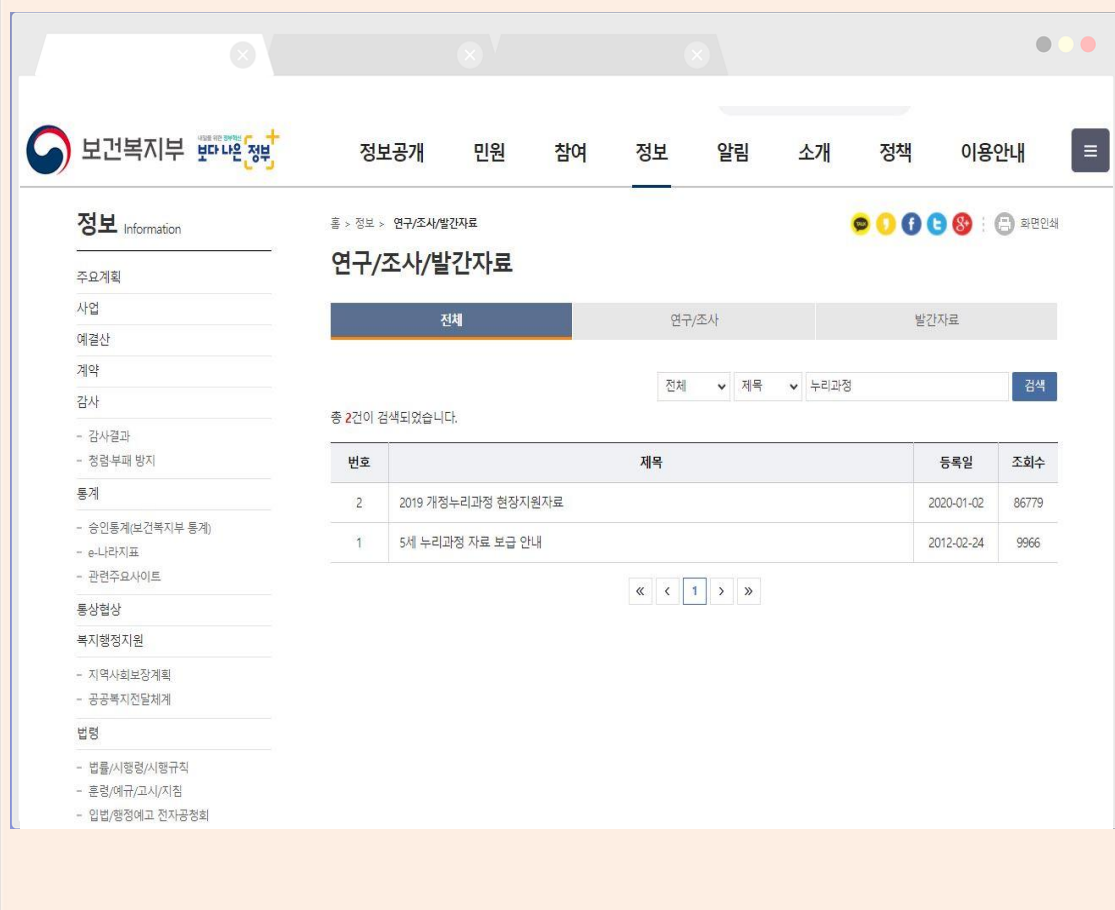
2 보육지원서비스

7) 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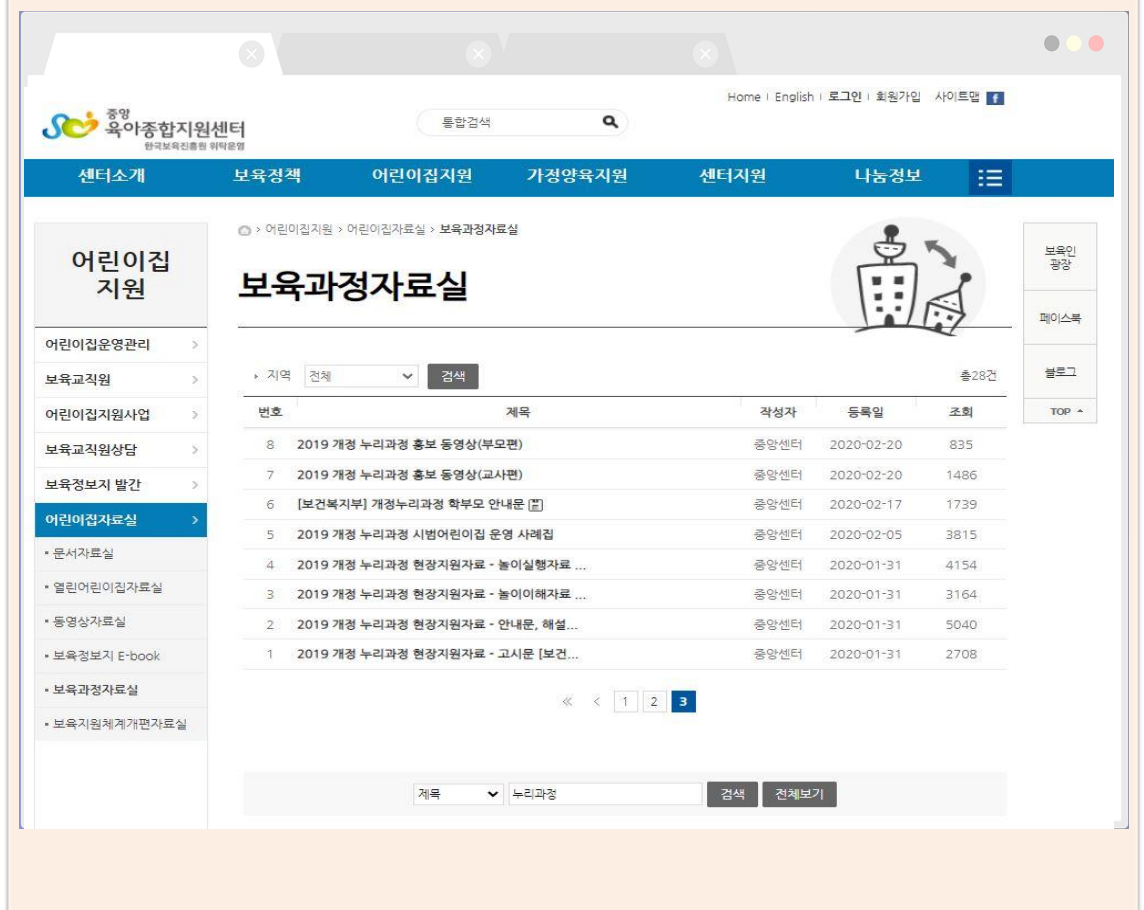
🔍 누리과정에 대해 궁금해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 →연구/조사/발간자료' 에서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central.childcare.go.kr)
'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자료실 → 보육과정자료실' 게시판



위의 사이트에서 '누리과정'을 검색해 보세요!

누리과정 **검색** →

8) 어린이집 · 유치원 정보공개

어린이집 · 유치원 정보공개란?

- 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제도를 시행

어린이집 정보 공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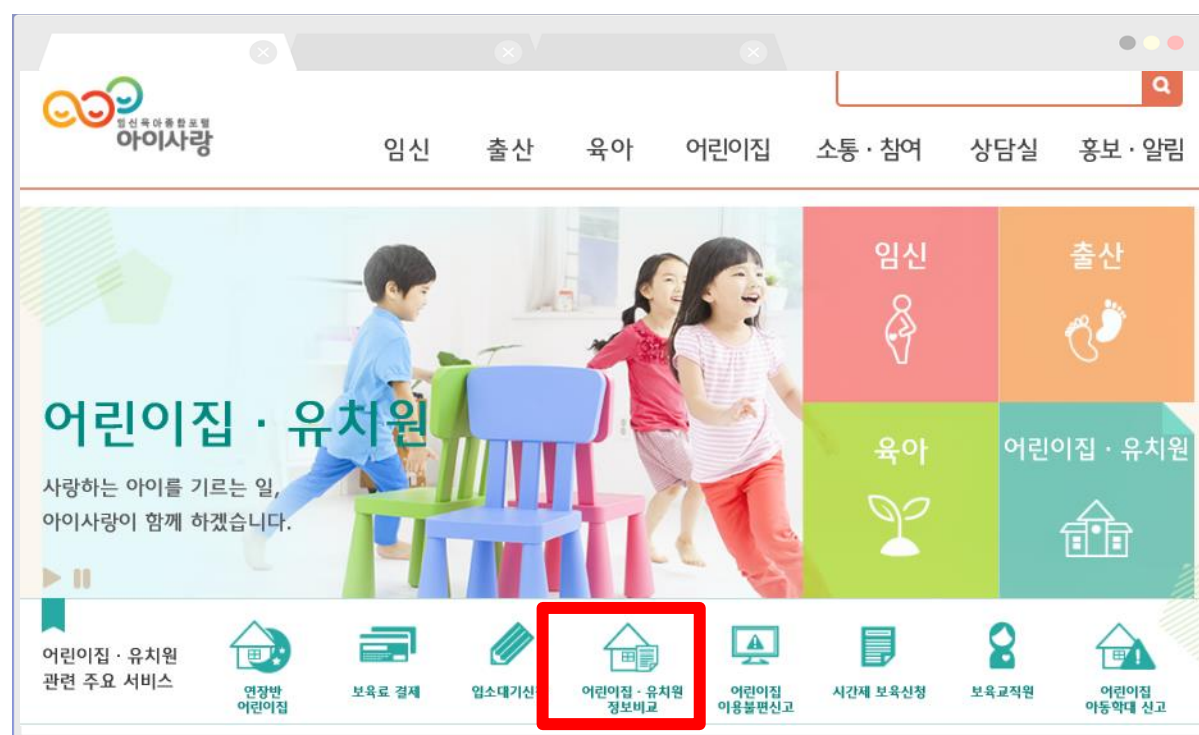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항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 · 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 · 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3	내용
1. 어린이집 시설 설치 · 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명칭, 시설현황, 반수, 원아수, 직위 · 자격별 교직원 현황 등
2.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등
3.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현황(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4. 어린이집 예산 ·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회계 예 · 결산서
5. 영유아의 건강 · 영양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 건강검진현황, 환경 위생관리 현황, 사고 발생현황, 어린이집 급식현황, 안전점검현황,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등
6.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어린이집 · 유치원 정보공개

어린이집 · 유치원 정보공개 확인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접속 후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비교 > 어린이집 명 입력, 검색 > 어린이집 선택 > 정보 확인



☞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http://www.childinfo.go.kr>



※ 아직 궁금 한 것이 있으신가요?

대표 사이트 안내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번없이) 129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모바일)m.childcare.go.kr

★ 카드 신청, 입소 대기, 어린이집 찾기, 정보공시 등 보육관련 대표사이트

- 보육료 신청 www.bokjiro.go.kr(복지로)
- 유아학비 고객지원센터 ☎ 1544-0079
- 아이사랑헬프데스크 ☎ 1566-3232
- 입소대기 신청 www.childcare.go.kr(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육아정보는?

어디? 어디있을까?

여기! 여기있었네.

가득~ 가득 육아정보

강원도 육아정보

1)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

2) 강원도 특색 지원사업

3) 지원서비스

- 건강지원 서비스
- 양육지원 서비스
- 기타지원 서비스



1)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란?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강원육아실현'을 비전으로 영유아 부모교육, 영유아 놀이지원, 가정양육과 관련된 상담,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지원, 보육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상담 제공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육아지원전문기관

센터주요사업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정보 제공 - 가족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람 문화공연 • 마음 아라 • 열씨구 절씨구 • 랜선 강원 홈림픽 - 자체 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힐링 아트 체험 • 부(父)라보 대디 • 통통(捅通)한 부모교육 • 감성 우체통 - 영유아 가족 대상 공모전 - 양육 관련 부모교육 - 전문 상담가를 통한 양육 상담 (온라인,오프라인)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 교육 - 공통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로버 부모교육 • 클로버 부모자녀 체험활동 • 자녀 권리 존중 부모교육 • 가정 내 놀이환경 점검부모교육 •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 영유아 발달이해 부모교육 • 부모 양육태도 점검 부모교육 •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모교육 •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 아이 사랑 플래너 부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정서 상담 - 강원도내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평가제, 보육과정, 재무회계) - 제4차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연수, 교육, 소모임워크숍) - 보육교직원 교육 (직책별 교육, 역량강화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 어린이안전교육-실습, 아동권리등) - 열린 어린이집 지원 (설명회, 컨설팅, 홍보 및 정보제공) - 부모 모니터링단 교육 - 취약보육 지원사업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 보육교사 대상 공모전 - 보육교직원 상담사업 (개별, 집단, 비대면) -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대응 (교육, 자문 등) - 어린이집 운영·이용 등에 관한 상담 - 대체교사지원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제공 - 보육정보지 제공

2) 센터 이용안내

• 이용시간

- > 평 일 09:00~18:00
- > 문 의 033) 244-2660, 4660. 8660
- > 팩 스 033) 244-9660
- > 홈페이지 <http://gangwon.Ehildcare.go.kr>

• 상담실

- > 상담내용 자녀양육, 아동발달, 어린이집 운영등 보육 관련 상담
- > 상담방법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전화, 방문상담

• 센터 강좌

- > 이용방법 센터강좌에서 교육명 선택 후 신청접수
- > 이용대상 보육교직원 · 학부모 · 유아보육관련 학생등 누구나

❖ 센터 오시는 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보호자 중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출생 월부터 48개월간 매월 50만원
 - 0 세: 월 90만 원(육아 기본 수당 50 + 아동 수당 10 + 가정 양육 수당 30)
 - 1 세: 월 75만 원(육아 기본 수당 50 + 아동 수당 10 + 가정 양육 수당 15)
 - 2~3세: 월 60만 원(육아 기본 수당 50 + 아동 수당 10)
- *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 원(가정 양육 수당 미지원)
- **지원(신청)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강원도 콜센터 033-120



강원도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모두충족):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춘천시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원주시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강릉시	30	50	100	100	100
동해시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태백시	50	100	360	360	360
속초시	50	70	100	200	200
삼척시(지급일로부터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추가지급)	100(100)	150(150)	200(200)	200(200)	200(200)
홍천군	200	300	600	600	600
횡성군	240	1200	1080	1080	1080
영월군	30	50	100	300	300
평창군	100	300	300	300	300
정선군 (출산육아용품)	120(20)	120(20)	120(30)	120(30)	120(30)
철원군	50	150	200	200	200
화천군			150	150	150
양구군	100	200	300	400	400
인제군	200	300	500	700	700
고성군	140	290	460	460	460
양양군(출산축하금)	120(100)	240(100)	720(100)	1,800(100)	1,800(100)

♥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110만원)/ 동결배아 7회(50만원)
 - 인공수정: 5회(30만원)
-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지원절차** 보건소에 신청
- **문의처** 여성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인터넷(online.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대상**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자
- **지원내용**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지원하는 제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신청절차**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출산한 2세 미만의 자녀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연락처 1577 - 1000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원
- **문의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내용** 철분제 지원
(엽산제는 지자체 마다 상이)
- **신청절차** 지역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 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다를 수 있음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단, Q38.1 설유착증은 제외)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체중별 최고 1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
- **지원(신청)절차** 주소지보건소에 신청
-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서비스

- **지원대상** 당해년도 출생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18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검사 및 의료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지원
- **문의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만6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건강검진 8회, 구강검진 3회 비용 전액 지급
- **지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 발송, 영유아 가정은 가까운 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실시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사이트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지원

- **지원대상** 생후 6개월~만12세 어린이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접종가능
 임신부 지원 - 임신주수에 상관없으며 산모수첩, 고운맘 카드로 임신 확인
-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접종 1회
- **지원(신청)절차** 관할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처** 관할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실명 예방

- **지원대상** 만 3~6세 아동
- **지원내용** 어린이 눈 건강 교육사업,
 실명예방 홍보사업,
 자가 시력검진사업
- **지원(신청)절차** 한국실명예방 재단
- **문의처**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
 (☎033-249-2987)

♥ 만 12세 이하 아동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05.1.1. 이후 출생)
-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17종)의 민간 의료
 기관 접종 비용 지원-항목
 확대 + 예방접종 시행 비용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지원(신청)절차**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방문
- **문의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정책과
 (☎ 033-249-2671)



■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원대상 가정생활에 도움 받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 부모
- 지원내용 가족교육 제공, 가족상담 실시, 가족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 이용절차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방문, 온라인 신청
-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3개월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소득 따라 비용 차등 지원)
- 지원(신청)절차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3698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지원대상 전국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 지원내용 온라인 부모교육(26개 강좌),
오프라인 부모교육(찾아가는 부모교실, 찾아가는 학부모 콘서트)
- 이용절차 지역(93개 지역)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 문의처 학부모지원센터 (☎02-3780-9938,9940)

■ 공통 육아나눔터 운영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조)부모 및 자녀
- 지원내용 자녀 돌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이용절차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하여 가입신청
-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 한부모 가족 서비스 지원내용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미혼모·부 초기지원

• 한부모 지원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여성가족부 온라인 상담 (www.mogef.go.kr)
- **교육비 지원 문의처**: 교육부(1544-9654), 주거 지원 문의처(lh공사 1600- 1004)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문의처 (02-3479-5529)

❁ 다문화 가족 지원 내용

- 주거, 맞춤형 기초 생활보장, 긴급 복지지원제도
- 신소외 계층 정보화교육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및 직업교육 훈련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주거 지원 문의처** (lh공사 1600-1004), 생계, 의료, 교육, 급여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정보화 교육 지원 문의처 (02-2013-8710))
- **상담 지원 문의처** :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실종 대비 아동 정보 사전 등록 신청 서비스

- **이용절차**: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 **사전등록 신청방법**: 안전 dream 홈페이지 신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방문 신고 등
- **문의처** : 국번없이 182 또는 117

❁ 실종 아동 발생 및 보호시 신고방법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

- 1단계 : 국번없이 182번으로 전화
- 2단계 : 실종아동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

2.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신고

[참고자료]

육아정보는?

어디?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있었네.
가득~ 가득 육아정보

- 2022 보육사업안내
-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안내
-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 정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관련 홈페이지

- 복지로 www.bokjiro.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